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3가합418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황건수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이태종

변론 종결2024. 9. 6.

판결 선고2024. 11.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E 주식회사가, 피고 B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1) 기재 이익배당을, 피고 C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순번 1, 2 기재 이익배당을, 피고 D에 대하여 한 별지3 목록 순번 1, 2 기재 이익배당을

각 취소하고2), 원고에게, 피고 B은 3,431,025,064원, 피고 C는 118,316,484원, 피고 D은 201,263,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2010. 3. 26. E에게 9,000,000,000원을 이율 9%,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2%, 변제기 2011. 3. 2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2011. 3. 26. 위 변제기를 2012. 3. 26.로 연장하였는데, E이 2011. 12. 25.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다. E은 2021. 10. 20. 대전지방법원 2021회합502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22. 1. 20. E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을 8,202,178,703원, 개시 전 이자를 7,241,736,966원, 개시 후 이자 등을 0원으로 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은 이의하지 않고 그 전액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2022. 10. 27. 위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22. 11. 11.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 C, D은 각 E의 주식 70,236주, 3,586주 6,100주를 보유하고 있던 E의 주주들인데, E은 별지 1 목록 '이익배당일'란에 기재된 각 일시에 위 목록 '입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였고(다만 피고 B은 2019. 4. 4. 입금받은 507,000,000원 중 307,257,228원을 2019. 5. 10. E에게 반환하였다), 별지 2 목록 '이익배당일'란에 기재된 각 일시에 위 목록 '입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별지 3 목록 '이익배당일'란에 기재된 각

일시에 위 목록 '입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을 피고 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별지 1, 2, 3 목록 기재 '이익배당일'란에 기재된 각 일시에 '배당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을 이익배당금(피고 C, D의 경우 입금액과 이익배당액이 같고, 피고 B의 경우에는 입금액에서 2019. 5. 10. E에게 반환한 307,257,228원을 공제한 액수가 이익배당액이다)으로 지급하였는바, E의 위 각 이익배당행위(이하 '이 사건 각 이익배당'이라고 한다)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갖고 있는 원고를 비롯한 E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E의 재산상태, 사업 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익배당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3,431,025,064원(별지 1 목록 기재 각 배당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 피고 C는 118,316,484원(별지 2 목록 기재 각 배당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 피고 D은 201,263,400원(별지 3 목록 기재 각 배당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이 사건 대출에 따라 A이 E에게 9,0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이익배당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이 2018. 4. 4. 기준 12,745,108,296원[잔존 원금 8,178,553,904원 + 미수이자 4,564,436,892원 + 가지급금 2,117,500원], 2019. 4. 4. 기준 13,464,969,223원[잔존 원금 8,178,553,904원 + 미수이자 5,284,297,819원 + 가지급금 2,117,500원], 2020. 3. 31. 기준 14,178,428,513원[잔존 원금 8,178,553,904원 + 미수이자 5,997,757,109원 + 가지급금 2,117,5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일자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이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1,328,528,182원 및 그중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에 해당하는 1,000,000,000에 대하여 2011. 12. 26.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2011. 12. 25.으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하는바(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1190호)에서 원고는 적극적으로 위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한편, 위 채권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위 판결이 확정된 2016. 2.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이익배당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각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이익배당 일시인 2018. 4. 4., 2019. 4. 4., 2020. 3.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이익배당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E의 무자력이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4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6, 16, 17, 18, 21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일시를 기준으로 할 때 각 이익배당행위마다 E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거나 심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E에 대한 2018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8. 12. 31. 기준 E의 자산 총계는 4,370,039,822원, 부채 총계는 593,151,495원, 2019. 12. 31. 기준 E의 자산 총계는 4,306,474,824원, 부채 총계는 590,611,676원, 2020. 12. 31. 기준 E의 자산 총계는 4,089,537,964원, 부채 총계는 1,442,624,038원이나, 위 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2018. 4. 4. 기준 12,745,108,296원, 2019. 4. 4. 기준 13,464,969,223원, 2020. 3. 31. 기준 14,178,428,513원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가 반영되면 위 각 일시를 기준으로 E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E은 적어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F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총수 25,500주 중 9,180주(총 주식의 36%, 이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한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는바, 위 각 표준대차대조표에서 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각 2018. 12. 31. 기준 3,632,742,950원(표준대차대조표상 투자유가증권 외 항목, 이하 같다), 2019. 12. 31. 기준 3,625,748,904원, 2020. 12. 31. 기준 3,557,784,000원으로 파악하기는 하였으나, 위 가액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배당할인모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와 그 액수의 차이가 크므로(배당할인모형을 적용할 경우 위 가액보다 2~3배,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4~5배 정도 높게 계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표준대차대조표의 투자유가증권 외 항목에 기재된 가액이 위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에 해당한다고 신뢰할 수는 없다.

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이익배당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이익배당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고,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이익배당 당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에 대하여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 당시 G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E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결과보고서(갑 제6호증) 외에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산정할 근거가 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 조사결과보고는 2022. 1.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8,708,554,400원으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이익배당 일시와는 각 2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이 사건 각 이익배당 일시 당시의 가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오히려 피고가 G회계법인이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F 주식의 1주당 주식평가액(을 제15호증 주식평가 보고서)을 근거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계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2017. 12. 31. 기준 16,463,347,740원(1주당 주식평가액 1,793,393원 × 9,180주), 2018. 12. 31. 기준 16,815,391,560원(1주당 1,831,742원 × 9,180주)이다.

위와 같이 계산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반영하면, 이 사건 각 배당일시를 기준으로 한 E의 자산 및 부채는 개략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다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외에 이 사건 이익배당일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자산 및 부채를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이익배당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2018. 12. 31. 당시의 가액을 적용한다).

2018. 4. 4.	17,552,688,432	13,338,259,791	4,214,428,641
2019. 4. 4.	17,496,117,480	14,055,580,899	3,440,536,581
2020. 3. 31.	17,347,145,524	15,621,052,551	1,726,092,973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E은 피고들에게, 2018. 4. 4. 기준 1,836,195,448원(피고 B에 대하여 1,672,308,328원 + 피고 C에 대하여 60,675,120원 + 피고 D에 대하여 103,212,000원)을 이익배당 하였고, 2019. 4. 4. 기준 합계 1,484,409,000원(피고 B에 대하여 1,328,716,236원 + 피고 C에 대하여 57,641,364원 + 피고 D에 대하여 98,051,400원)을 이익배당 하였으며, 2020. 3. 31. 기준 430,000,500원(피고 B에 대한 이익배당)을 이익배당 하였는바, 위 각 일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E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각 액수가 위 각 이익배당 액수보다 많은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이익배당으로 인해 E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거나 심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평가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한데, 이 사건 회생절차 당시 G회계법인이 배당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8,708,554,4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위 산정액과 비교해 봤을 때 앞서 살펴본 상증세법에 따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과다하여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 7911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 소유의株式이 비상장주식이어서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4691, 2007다4707(병합)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에 근거하여 산정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제시한 조사결과보고는 2022. 1.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이익배당 일시와는 각 2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이 사건 각 이익배당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배당할인모형에 따른 평가방식이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방식보다 더 정확히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상증세법에 따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현저히 부당한 액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또한 E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이 사건 각 이익배당 당시 E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이익 배당 당시에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세라

판사김민지

판사박재남

별지

1) 청구취지에는 순번 1 내지 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순번 1 내지 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원고는 당초 E과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23. 12.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E의 피고들에 대한 이익배당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그 취지에 맞게 청구취지를 일부 정정하였다.

3) 각 회계연도 기준 자산 총계 - 투자유가증권외 항목의 금액 + 상증세법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상장주식의 가액

4) 각 회계연도 기준 부채 총계 + 각 이익배당일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